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 경찰청		배포일시	2019. 2. 14.(목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홍철 • ☎ (044) 201-3862, 3863
	경찰청 교통기획과	담 당 자	• 과장 황창선, 경정 최대근, 경감 백초현 • ☎ (02) 3150-2650, 2153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해부터 ‘교통안전 종합대책(‘18~’22)’을 수립하였으며,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 - 이에 따라,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,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.
 - 교통안전 교육은 ‘인지능력 자가진단’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 - 특히, 그간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하였으나,
 - 올해부터는 ‘인지능력 자가진단’(1시간)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 - * (당초) 적성검사만 실시 → (올해부터)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의무교육 실시
- 앞으로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 살피는 한편,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2.14.(목)) >

- ◆ 사람잡은 95세 운전자, 작년 ‘5분 적성검사’만 받았다
 -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이 5→3년 단축됐지만, 알맹이는 그대로
 -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4년 사이 75% 가량 증가

<참고자료>

□ **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요** (도로교통법 §73-⑤, §87-③ 1호)

○ (주요 내용)

- '19. 1. 1.부터 75세 이상인 자의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,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취득과 갱신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

○ (교육 방법)

- 교육생이 컴퓨터를 이용해 인지능력 자가진단*을 실시, 통과 시 안전운전 방법 등 교육(자가진단 1 + 안전 교육 1 = 2시간으로 구성)

* '인지능력 자가진단 미통과 시 → 간이치매검사(MMSE-DS) → 수시적성검사 대상 분류'로 진행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홍철사무관(☎ 044-201-3863), 경찰청 교통기획과
백초현 경감(☎ 02-3150-26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